

특별기고- 여성발전기본법 이후의 과제 ① 제정과정

“제2, 제3 손질 통해 거듭날 수 있다”

제정기간 짧았으나 남성의원 적극 참여 이끌어



신용자/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1995년 12월 19일은 우리나라 여성사에서 굵직하게 기록될 만한 날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바쁜 일정에 절대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11일 대통령정책자문기관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방안’을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락하고 채택하였다는 발표에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 10대 방안 중 가장 핵심부분인 ‘여성발전기본법’이 불과 두달만에 제정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환호할 만한 일이다.

이 법은 초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이 법에 큰 기대를 걸고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람들 중에는 혹시나 졸속으로 처리돼 실효성 없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염려를 했고 개중에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로 법률의 성립과정을 비판하기

도 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우리나라에 탄생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희망적인 발전을 예고하는 일이다. 이 법은 국회 통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 법률 안에 담겨져 있는 여성발전을 위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은 대부분 그 규정 내용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실효성을 가지고 운용되기를 바라는 관계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표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교해서 평가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여성문제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사회 문제이며 전국민의 문제임은 이 법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국회가 이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을 갖고 얹히는 다른 법률 찾아내 본 결과 아래의 25개 다른 법률과 관련을 갖고 있었다.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교부법, 기금관리기본법,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세법,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 한국여성개발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교육법, 사회교육법, 방송법, 학교급식법, 민법 등이다.

이 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여성문제는 이처럼 여러개의 다른 법률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을 가지고 얹혀 있으며 이 다른 법률들의 관할 관청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여성문제이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여성의 발전과제를 풀어나가는 일이다.

필자는 이 법안의 심의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지켜 보면서 몇가지 착잡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국회의 행정위원회가 소관위원회가 되어 이 법률안

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 참여율은 형편없다는 사실은 참담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여성계의 따가운

비난 속에서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여·의원(여성의원은 한사람도 없지만)들이 진지하게 법조문을 심의·검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여성시대’의 문이 열릴 때가 멀지 않았음을 전망할 수 있었다. 관련부처의 8명의 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점심도 거르고 꼼꼼하게 법조문을 심의하는 남성의원들의 태도가 믿음직스럽기까지 했다.

이 법이 장차 얼마나 실효성 높은 실정법으로 기능을 다하느냐 하는 문제는 법의 직접 수혜자의 관심과 애정에 달려 있다. 사족을 달자면 이 법이 성립되는 기간은 바록 짧았지만 ‘산고’를 겪으며 태어났는데 법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언론기관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처음 제정될 때부터 완벽하게 모양새를 갖춘 법은 찾기 어렵다. 개정을 거듭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은 기왕에 만들어진 법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때다.

법적 실효성 여성의 관심과 애정에 달려

15대 여성의원 대거 배출 일순위 과제

있기 때문에 이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제2차, 제3차 작업이 차례로 기다리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발전을 크게 성취시킬 수 있는 전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여성발전, 여성문제 등은 남·녀 중 여성만을 따로 떼어 놓았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남녀가 함께 어울려 활동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성에게만 불리하고 억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는 것으로 남성의 입장과 비